

**2026-3차 충신동 연극인 두레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26. 8. 21.)**

2026. 8. 21.

목 차

1) 두레주택 개요	3p
2) 공급대상	4p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5p
4) 사전 주택공개	7p
5)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7p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8p
7)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9p
8)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10p
9) 유의사항	11p
10) 임대신청 문의	12p
[별지1호] 연극인 임대주택 입주지원서	13p
[별지2호] 충신동 연극인주택 추천서	15p
[별지3호] 소득자료 출처	16p
[별지4호]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18p
[별지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p

2026-3차 충신동 연극인 두레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충신동 연극인 두레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2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연극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주택사전공개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26. 8. 21. (금)		'26. 8. 26.(수) ~8. 27.(목)		'26. 9. 1.(화) ~ 9. 3.(목)		'26. 9. 11.(금)		'26. 9. 16.(수) ~ 9. 18.(금)		'26. 10. 21.(수)		'26. 10. 28.(수) ~ 10. 29.(목)

※ 입주예정기간은 2026. 11. 16.(월) ~ 2027. 1. 15.(금)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두레주택 개요

가. 두레주택 정의

- **주방,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세어하우스형 임대주택)**

※ 세어하우스 :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

나. 두레주택 특징

- 주방·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입주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
- 입주자간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에 따라 운영하며 자율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

2

공급대상

가. 금회 공급대상 : 총 5호

공급대상 (호점)	위치	금회 공급	호	전용 면적 (m ²)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여부	공급 대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4호점	종로구 충신동 1-136	3호	101	10.54	13.93	10.54	3.39	공급	남성
			102	10.72	14.17	10.72	3.45	공급	
			104	12.55	16.58	12.55	4.03	공급	
5호점	종로구 충신동 1-139	2호	101	7.31	13.54	7.31	6.23	공급	여성
			103	8.17	15.14	8.17	6.97	공급	

-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로, **동일호점 내에서는 동일성별에게만 공급합니다.**
-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호별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 방 면적이 협소하며, 방 구조에 따라 침대나 기타 생활가구 비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방, 거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대상 (호점)	위치	호	전용면적 (m ²)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4호점	종로구 충신동 1-136	101	10.54	1,090,000	149,400
		102	10.72	1,090,000	147,200
		104	12.55	1,090,000	162,500
5호점	종로구 충신동 1-139	101	7.31	1,090,000	87,200
		103	8.17	1,090,000	118,800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주택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입주 후 세대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전기 및 수도 등)는 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임대료는 3가지 조건으로만 선택 가능 (첨부1)

다. 임대기간

- 최초 계약 기간 : 2년
(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재계약요건 : 소득 및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면서 연간 2작품 이상 연극 활동이 있는 자에 한함

라. 기타 유의사항

- 해당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택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여건 상 주차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차량 주차문제로 인근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외 주차공간 확보는 입주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입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아울러,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 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2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50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본인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연극분야종사자로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극분야 종사자	
'연극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연극분야에 최소 2년 이상 종사하며 누적 참여 공연이 4 작품 이상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청년 연극인 및 연극영화과 관련 졸업생들의 신청자격 확대를 위해 경력 과 공연수가 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추천서 제출시 1차 심사 객관적 점수중 '연극분야 종사기간' 및 '참여공연수'에서 최저점으로 배점받아 신청가능합니다.	
※ 추천자격 : 연극관련학과 교수, 연극관련협회, 10년 이상 연극 종사자	

※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참여작품 전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 청 자	구 분	자 격
1인 단독세대주 (1인 가구형)	무주택세대주	세대구성원*이 1인인 가구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이 분리가 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2인가구로 인정되어 1인가구형 신청 불가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 : 신청자 본인(무주택세대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소득 세부기준

구 분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소득	1인 가구	2,669,354원 이하	3,432,027원 이하
※ 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인가구 20%p 가산된 금액을 적용하였음.			

○ 입주자격 검증 및 소득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소득금액 확인방법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로 소득금액은 해당세대의 합계액을 말함.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 (무주택, 서울시 거주, 소득요건 등)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 평가 방법

구 분	평가 방법			
1차 심사 (객관적 평가)	■ 신청자가 체크한 내용을 근거로 고득점 순으로 공급세대의 10배수 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추천서 제출자는 연극분야 종사기간과 참여공연수 배점이 최저점 적용됨.			
	평가항목		배점	합계
	총 계			8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20	20
		70% 이하	15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¹ (최종전입일 기준)	10년 이상	20	20
		10년 미만	17	
		7년 미만	15	
		5년 미만	13	
		3년 미만	10	
	연극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	20	20
		10년 미만	17	
		5년 미만	14	
		2년 이상 3년 미만	11	
	참여 공연수	15개 이상	20	20
		15개 미만	17	
		10개 미만	15	
7개 미만		13		
5개 미만		10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¹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 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서울 특별시로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2차 심사 (주관적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지원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배점	합계	
	연극분야 역량평가	10점	20	
	공동체 유지 방안	5점		
지역사회 발전거점으로서 비전제시	5점			

○ 입주자 선정 기준

- 1차 (객관적평가) 심사점수와 2차 (주관적평가) 심사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경합 시 객관적평가의 '연극분야 종사기간', '참여공연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령이 낮은 자(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준)으로 선정 (단, 연령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4

사전 주택공개

○ 신청접수 전 주택공개

- 공개기간 : 2026. 8. 26.(수) ~ 8. 2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개방법 :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 및 관할센터에 방문 전 연락하여 입주자가 자유롭게 확인
- 문의번호: ☎ 02) 6910-940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 ※ 주택공개는 청약접수 전 현장이해를 위한 사전공개이며, 특정세대를 지정하여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당첨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받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합의에 의한 당첨자간 상호교환도 불가)
 - ※ 주택은 공개기간 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당첨 동호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전 대상자에게만 공개합니다.

5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26. 9. 1.(화) ~ 2026. 9. 3.(목)

○ 신청접수 방법

① [별첨5]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②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③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이력)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④ [별첨1] 연극인 임대주택 입주지원서(필수) 및 해당자는 [별첨2]추천서 제출

- 추천서  필수아님, 해당자만 제출

추천대상	청년 연극인, 연극영화과 관련 졸업생
유의사항	추천서 제출시 1차 심사(객관적 점수) 중 '연극분야 종사기간' 및 '참여공연수'에서 최저점으로 배점받아 진행됨에 동의하는 자만 작성하여 제출
추천자격	①연극관련협회 ②연극관련학과 교수 ③10년이상 연극 종사자 중 택1
추천서 양식	추천자가 ①,②의 경우 : 별지2호 추천서
	추천자가 ③의 경우 : 별지2호 추천서 + 추천자의 경력(10년이상 연극종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
	※ 추천자의 경력증빙 서류없이 제출한 경우 인정불가 ※ 직인(서명)없는 것은 인정불가

구 분	주 소	방 법	비 고
이메일 접수	jsdj98@i-sh.co.kr	신청서류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	2026. 9. 3.(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두레주택 담당자앞 (우:06336)	신청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026. 9. 3.(목)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충신동 두레주택_신청서류_성명_날짜”순으로 작성하시고, 신청서류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02-3410-854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10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 탈락자 또는 미계약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일부를 추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입증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탈락됩니다.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발표일시 : 2026. 9. 11.(금)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게시

■ 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간: 2026. 9. 16.(수) ~ 9. 18.(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구 분	주 소	방 법	비 고
이메일접수	jsdj98@i-sh.co.kr	신청서류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	2026. 9. 18.(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두레주택 담당자앞 (우:06336)	신청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026. 9. 18.(금)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충신동 두레주택_심사서류_성명_날짜”**순으로 작성하시고, 신청서류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02-3410-854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연극분야 종사기간 증빙서류	1순위: 협회, 극단등에서 발급하는 참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종사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순위: 참여공연 증빙서류(1순위 서류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불인정) ※ 포스터, 팸플릿 등과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신 경우 포스터에 기재된 기간과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다를 경우 더 긴 기간으로 인정 ※ 포스터, 팸플릿 등에 마감일이 적혀있지 아니하고 오픈런이 써 있는 포스터는 참여작품 수로는 인정 가능하나 종사기간은 불인정 (종사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공연 증빙서류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실린 프로그램이나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

■ 소명대상자 발표: 2026년 10월 중

- 증빙서류 추가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7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배정된 동호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적격자 전체를 예비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예비자 순위는 당첨 예정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6. 10. 21.(수)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형주택공급부

■ 계약일시 : 2026. 10. 28(수) ~ 10. 29.(목)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입금확인증

② 신분증(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

③ 본인도장(본인계약시 서명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추가적인 제출서류)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 위 ①,②,③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제외)

: 위 ①,②,③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등

- 이 주택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호수이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이 불가합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가구원 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무주택 소유여부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53조를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 02)3410-8546
입주 및 주택공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 02) 6910-9400

- 대표전화 및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ARS(1600-3456)조회
- ※ 유선(전화)확인으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극인 임대주택 입주지원서

1. 연극 분야

1.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명	
전화번호					이메일		

※ 남성은 자동으로 4호점, 여성은 자동으로 5호점으로 접수됨(호점 내 호실은 선택 불가)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

※ 해당되는 소득에 하나만 체크

2. 경력 사항

연번	참여 기간	작품명	참여 분야	참여 역할
1	~		극작/연출	연출
2	~		배우	경비원
3	~		연출	연출
4	~		제작/배우	회사원
5	~		극작/연출	연출
6	~		배우	변호사

※ 참여작품 전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추가페이지 작성)

3. 자기 소개

경력 사항에 기술한 작품에 대한 본인이 수행했던 분야 및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앞으로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기술

2. 연극인 임대주택 공동체 유지 방안(세어하우스)

※ 추가페이지 작성 가능

3. 지역사회 발전 거점으로서 역할 및 확대 가능성 및 소규모 발표 등 지역 주민과 화합의 장 마련 비전제시(연극인공유센터 활용)

※ 추가페이지 작성 가능

위와 같이 연극인 임대주택 입주지원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별지 2호]

발급번호 : 제2026-001호

충신동연극인주택 추천서

- 1. 추천 분야 : 충신동연극인주택 입주자 추천
 - 2. 추천대상자(주택신청자) 성명 : _____
 - 생년월일 : . . . (00세)
 - 소속단체 :
 - 활동기간 : 00년 00개월
 - 3. 추천 의견
- 5줄 이내(나눔명조, 13포인트, 장평 96, 자간 -4)

위와 같이 충신동연극인주택 입주자로 추천합니다.

2026. . .

추천자 기관명 : (직인)
연락처 : - - ※필수
직 위 :
성 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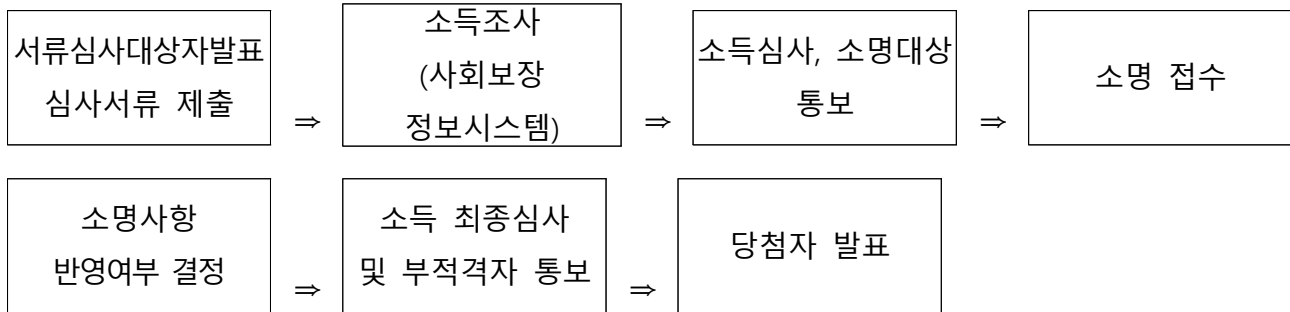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 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반영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